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모집 공고

대구가톨릭대학교 20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로컬 맞춤형 R&D 천연물연구혁신사업단에서 수행하는『경북 혁신형 천연물 신약 바이오 산업 특화 R&D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26일

RISE 천연물연구혁신사업단 단장

1 지원개요

① 사업목적 및 분야

- 목적 : 우리 대학의 보유 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 분야 : 천연물·바이오·AI 관련 주제 전 분야

② 지원대상

-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 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가 경북지역에 소재한 기업 우대
- 대학 : 대구가톨릭대학교(참여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산학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전임교원으로 함

③ 모집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9. 26.(금) ~ 10. 10.(금)
- 신청기간 : 2025. 9. 26.(금) ~ 10. 10.(금)

④ 지원과제 수행 기간

- 2025. 11. 3.(월) ~ 2026. 1. 30.(금)

⑤ 지원규모

- 연구비 : 과제당 15백만원 ~ 25백만원(칠곡군 소재의 경우, 30백만원 ~ 40백만원)
- 총 8개 사 내외 차등 지원
- 지원 규모는 총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지원규모	건당 최대 지원금액(부가세 포함)	기업 대응투자금
8건 내외	25,000천원 (칠곡군 소재 기업 40,000천원)	총사업비의 25% 이상 권장 (현금 10%, 현물 15%)

2 지원분야 및 내용

① 지원분야

- 천연물·바이오·AI 관련 주제 전 분야의 기술개발, 제품화 지원

② 지원사항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함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시, 개정된 내용 자동 적용)
- ※ 단, 간접비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에서 별도 편성 불가하며, 연구수당은 사업성과 및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중복으로 지급 불가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항목	사용용도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항목	사용용도
	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③ 참여기관 이행 사항

-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 시작 시점부터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SCIE급 전문 학술지 게재 1건(사사표기 필수) 또는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화 1건 이상(연구 참여자가 발명자로 포함)을 이행
 - 참여교원은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도출된 최소 1건의 기술, 노하우, 지식재산권 등을 참여기업으로 기술이전

3 평가 기준

① 선정절차



※ 전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사전 서류검토	• 지원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참여 제한 및 신청기업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류를 토대로 수행 계획 및 적합성 검토
선정과제 확정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선정결과 통보	• (필요시) 기업 방문 • 지원여부 심의 결과 통보

※ 선정평가의 경우 지원기업이 2배수 이하일 경우 1, 2차 통합하여 2차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③ 사전 서류 검토

- 참여 제한 및 지원 자격 부합성 (경북 지역) 등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 서류 미비 등 검토

④ 선정평가 기준

- 신청 서류를 토대로 과제 수행 계획, 수행 역량 및 지원 적합성 검토
- 산학연 전문가 (교내 및 외부) 총 5인 내외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

⑤ 선정과제 확정

- 지원 대상 선정 :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 로 구분 후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지원 규모 확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규모 확정
 - ※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총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지원 결격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기업 외 70점 이상인 기업 중 후보 기업 선정 가능함.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수행 계획 충실성	■ 프로젝트 목표 명확성 ■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구체성	30
수행 프로젝트의 창의성	■ 프로젝트 목표의 도전성 ■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20
수행 능력	■ 책임자, 수행기관과 인력의 제품개발 역량 ■ 대학과 기업의 체계적인 협업/역할 분담 ■ 기업(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비중	30
성과 및 활용 가능성	■ 파급효과 ■ 결과 활용 방안	2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추진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기업간담회 (사업설명)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	중간 점검	사업수행 및 결과평가
25.9.26. ~ 25.10.10.	25년 10월 중	25년 10월 중	25년 10월 중	25년 12월 중	'26. 1. 31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담당자 메일 (rise4331@cu.ac.kr)를 통해 접수
- 문의처

담당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RISE 천연물연구혁신사업단 - 담당자 : 천지운 팀원 - 문의 ☎ : 053-859-4332, 이메일 : rise4331@cu.ac.kr

- 제출 서류

No	제출 서류	제출 부수
1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3	청렴 · 성실 의무이행 서약서	1부
4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2년~24년)	1부
5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24년 12월 31일 자 기준)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해당 시)	각 1부

※ 제출 서류와 별개로 평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금 일체 반납해야 함.

7 지원제외

1. 과제 신청서 등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2)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타기관에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6) 최근 결산 기준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8)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의 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9)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 10) 접수기간 및 보완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11) 기타 RISE AI-DX혁신인재사업단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8 기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 RISE 천연물연구혁신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최종 결과평가 통보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운영

가. 기본원칙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BD)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함
- RISE사업비를 활용한 과제로, 사업단의 자체 기획 및 선정 기준을 기반으로 수행

나. 연구진 구성 기준

- 참여 주체: 대학(교원·학생),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기타 협력기관
- 필수 조건
 - 기업 소속 연구자 최소 1인 이상
 - 기업 연구자가 전체 연구진(학생 제외)의 20% 이상
 - 대학원생 참여 장려
 - 단순 참여가 아닌 대학 역할 명확히 기재
- 참여제한: 교원 1인당 동일연도 기준 1과제 원칙. 단, 전문성 필요 시 최대 5과제까지 참여 가능

다. 과제 조건

- 과제기간: RISE 연차별 사업연도 기준
- 지원금액: 과제당 국고지원금 상한액은 대학 자체 심의로 결정
- 산업체 대응자금(현금): 10~30% 권고, 실질적 기업 기여 유도
- ※ 법령 의무 매칭 비율 준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지역기업 참여 필수

- 타 지역 기업 참여 시 과제의 경상북도 지역과급효과 명시 필요

라.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해 기 수행 과제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수

마. 성과관리 및 기술이전

- 성과소유 원칙: 대학 소유 원칙이나 참여율·기여도에 따라 연구자 또는 공동소유 가능
- 사사표기: 사업과 관련된 논문 및 연구 산출물에 사사 표기

※ <작성예시>

- (국문)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단위과제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입니다.(과제관리번호)
-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yeongsangbuk-do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project[000 unit]
- 성과보고: 수행 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기술성과 자료 제출
 - 전자문서(PDF 포함)로 제출, 필요시 공개 가능
 - 대학 자체평가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 중간·성과평가에 반영

바. 기타 운영 기준

- 계획 변경: 기업, 연구책임자, 수행기간, 과제 목표 등 변경 시 사업단 심의·승인 필요
- 중단 또는 환수 사유: 연구부정, 참여제한 확정, 수행 불가 상황, 성과 조기 달성 등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

- 연구개발비는 항목별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준수
-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지출 방법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준용

○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비 집행 증빙 서류

- 지출 등 결의서 :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 영수증서 : 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기타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 계약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검수조서 등

- 과제 수행 종료 후 사업단은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고, RISE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과제 정산내역을 제출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함
- 간접비는 기업지원·협력 활동에서 편성 불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